

## 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·②(생략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9.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9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0. S클래스 수익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결영 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</u></p> <p><u>11. Cp클래스 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</p> <p><u>12. Cp-E클래스 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</u></p> <p><u>13. Cp2클래스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</u></p> <p><u>14. Cp2-F클래스 수익증권 : 퇴직연금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</u></p> <p><u>15. S-P클래스 수익증권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결영 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</u></p>

	<p><a href="#">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청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a></p>
<p><b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~9.(생략)</p> <p>②~⑤(생략)</p>	<p><b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~9.(현행과 같음)</p> <p><a href="#">10. S클래스 수익증권</a></p> <p><a href="#">11. Cp클래스 수익증권</a></p> <p><a href="#">12. Cp-E클래스 수익증권</a></p> <p><a href="#">13. Cp2클래스 수익증권</a></p> <p><a href="#">14. Cp2-F클래스 수익증권</a></p> <p><a href="#">15. S-P클래스 수익증권</a></p> <p>②~⑤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40조(보수)</b></p> <p>①·②(생략)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9.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40조(보수)</b></p> <p>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9. (현행과 같음)</p> <p><a href="#">10. S클래스 수익증권</a></p> <p><a href="#"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9.0</a></p> <p><a href="#"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3.5</a></p> <p><a href="#"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5</a></p> <p><a href="#"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</a></p> <p><a href="#">11. Cp클래스 수익증권</a></p>

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가. <a href="#"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9.0</a>  나. <a href="#"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7.2</a>  다. <a href="#">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5</a>  라. <a href="#"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</a></p> <p>12. <a href="#">Cp-E클래스 수익증권</a>  가. <a href="#"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9.0</a>  나. <a href="#"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3.6</a>  다. <a href="#">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5</a>  라. <a href="#"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</a></p> <p>13. <a href="#">Cp2클래스 수익증권</a>  가. <a href="#"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9.0</a>  나. <a href="#"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7.0</a>  다. <a href="#">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5</a>  라. <a href="#"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</a></p> <p>14. <a href="#">Cp2-F클래스 수익증권</a>  가. <a href="#"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9.0</a>  나. <a href="#"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5</a>  다. <a href="#">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5</a>  라. <a href="#"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</a></p> <p>15. <a href="#">S-P클래스 수익증권</a>  가. <a href="#"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9.0</a>  나. <a href="#"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2.8</a>  다. <a href="#">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5</a>  라. <a href="#"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</a></p>
<p>제41조(판매수수료)  ①·②(생략)  &lt;신 설&gt;</p>	<p>제41조(판매수수료)  ①·②(현행과 같음)  ③ <a href="#"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제34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</a></p>

<p>&lt;신 설&gt;</p> <p>③제2항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.</p>	<p>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,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“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”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(수익증권 환매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S클래스 수익증권 : 3년 미만 환매 시, 환매금액의 100분의 0.15 이내</p> <p>⑤ 제2항의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제4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.</p>
<p><b>제42조(환매수수료)</b></p> <p>①(생 략)</p> <p>②환매수수료는 ‘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채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‘이익금’이라 한다)’ 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p> <p>2. 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</p>	<p><b>제42조(환매수수료)</b>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환매수수료는 ‘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채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‘이익금’이라 한다)’ 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A클래스, Ae클래스, C1클래스, C2클래스, C3클래스, C4클래스, Ce클래스, I클래스, W클래스, S클래스</p> <p>가. 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p> <p>나. 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</p> <p>2. Cp클래스, Cp-E클래스, Cp2클래스, Cp2-F클래스, S-P클래스 : 환매수수료 없음</p>

<p>③(생략)</p>	<p>③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44조(신탁계약의 변경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1.~5.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6.~9.(생략)</p> <p>②~④(생략)</p>	<p><b>제44조(신탁계약의 변경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1.~5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의 2.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(법령 제80조제1항제3호의 2 각 목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)</u></p> <p>6.~9.(현행과 같음)</p> <p>②~④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46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b>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③~⑤(생략)</p>	<p><b>제46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b>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</p> <p><u>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.</u></p> <p><u>④~⑥(호변경)</u></p>
<p><b>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b></p> <p>①~⑤(생략)</p> <p>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</p>	<p><b>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b></p> <p>①~⑤(현행과 같음)</p> <p>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</p>

<p>경우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⑦~⑩(생략)</p>	<p>우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<u>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(자산운용보고서에 한한다)</u>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(<u>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</u>)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⑦~⑩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51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</b>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“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”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</p>	<p><b>제51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</b>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"<u>(Cp클래스, Cp-E클래스, S-P클래스의 경우에는 “연금지축계좌설정약관”)</u>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<b>부칙</b>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